

# TAKOBI

## [타코비] 정보공개서

(주)타코비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5006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5.01.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12.18.

### (주)타코비코리아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7, 에이동 1202호  
(관양동, 디지털엠피어)

Tel : 1544-5280 Fax : 031-421-5281

takobi.co.kr <http://www.takobi.co.kr>

“타코비” 가맹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1544-5280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타코비코리아	타코비 외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에이동 1202호 (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12.22	2018.01.01	김영환	1544-5280	031-421-5281
	법인등록번호	134111-0484266	사업자등록번호	602-81-68412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영환	타코비 외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7, 에이동 1202호 (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환	1544-5280	031-421-528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황은아	타코비 외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7, 에이동 1202호 (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환	1544-5280	031-421-5281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타코비]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타코비	-
상 호	타코비 OO점	-
상표(서비스표)		30류 등록번호(일자) 4013449120000(2018.03.28.) 16, 21, 35류 등록번호(일자) 4013694990000(2018.06.19.) 43류 등록번호(일자) 4103020150000(2014.10.16)
그 외 상표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4년	843,300	74,646	768,654	2,295,891	75,661	70,028
2023년	951,768	253,142	698,626	3,136,420	479,249	415,958
2022년	429,353	129,009	300,344	1,379,599	186,828	174,910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영환	대표	2017.12.22.~현재	(주)타코비코리아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황은아	사내이사	2017.12.22.~현재	(주)타코비코리아 이사	가맹 사업 관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0	6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타코비코리아 /타코비	가맹사업 경영	2017.12.22.~현재	타코비(등록번호: 20150065)이라는 가맹사업을 운영 중
가맹본부	(주)타코비코리아 /타코비비어	가맹사업 경영	2017.12.22.~2018	타코비비어(등록번호:20150069)라는 가맹사업을 운영
가맹본부	(주)타코비코리아 /타코비카페	가맹사업 경영	2017.12.22.~2018	타코비카페(등록번호:20150063)라는 가맹사업을 운영
가맹본부	주)타코비코리아/ 타코비치즈볼	가맹사업 경영	2017.12.22.~현재	타코비치즈볼(등록번호:20201608)라는 가맹사업을 운영 중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 및 당사의 승인을 받은 간판, 실사, POP 등	2018.03.28	4013449120000	김영환	2028.03.28
		2018.06.19	4013694990000		2028.06.19
		2014.10.16	4103020150000		2024.10.16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상표 소유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상표 사용기간 만료일은 위 3개의 상표의 각 존속기간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 Ⅱ. 가맹본부의 [타코비] 가맹사업 현황

### 1. [타코비]를 시작한 날: 2009년 09월

(최초 직영점 계약일 : 2007년 10월)

-> 당사는 2017년 12월 22일 타코비 가맹사업을 양수하였습니다.

### 2. [타코비]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오이시오사카	타코비	김영환	2009.09. ~ 2017.12.2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5층 517호(비산동, 안양무역센터)
(주)타코비코리아	타코비	김영환	2017.12.22.~2020.05.18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104동 902호
(주)타코비코리아	타코비	김영환	2020.05.19. ~ 2023.02.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1109호(비산동, 안양무역센터)
(주)타코비코리아	타코비	김영환	2023.02.27. ~ 현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7, 에이동 1202호 (관양동, 디지털엠펜터)

### 3. [타코비]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대분류	소분류
타코비	기타 외식	타코야끼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타코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7	46	1	94	91	3	87	84	3
서울	10	9	1	22	21	1	15	14	1
부산	13	13	-	19	19	-	19	19	-
대구	2	2	-	3	3	-	3	3	-
인천	4	4	-	4	4	-	4	4	-

광주	-	-	-	2	2	-	2	2	-
대전	-	-	-	1	1	-	1	1	-
울산	1	1	-	1	1	-	1	1	-
세종	-	-	-	-	-	-	-	-	-
경기	9	9	-	23	21	2	22	20	2
강원	-	-	-	1	1	-	1	1	-
충북	-	-	-	2	2	-	2	2	-
충남	-	-	-	1	1	-	2	2	-
전북	3	3	-	4	4	-	2	2	-
전남	-	-	-	2	2	-	2	2	-
경북	4	4	-	4	4	-	5	5	-
경남	1	1	-	5	5	-	6	6	-
제주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타코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4	91	12	2	17	7	84
2023	46	48	1	2	3	91
2022	33	15	2	-	-	46

### 6. [타코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타코비코리아	타코비치즈볼	20201608	외식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타코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84	104,221	11,342	395,445	130,236	10,196	1,290	79곳 산정
서울	14	125,376	18,458	395,445	130,236	28,517	2,372	14곳 산정
부산	19	119,745	12,950	275,745	54,223	23,266	1,454	17곳 산정
대구	3	-	-	-	-	-	-	5곳 미만
인천	4	-	-	-	-	-	-	5곳 미만
광주	2	-	-	-	-	-	-	5곳 미만
대전	1	-	-	-	-	-	-	5곳 미만
울산	1	-	-	-	-	-	-	5곳 미만
세종	-	-	-	-	-	-	-	-
경기	20	113,756	12,769	228,077	41,389	10,196	1,354	18곳 산정
강원	1	-	-	-	-	-	-	5곳 미만
충북	2	-	-	-	-	-	-	5곳 미만
충남	2	-	-	-	-	-	-	5곳 미만
전북	2	-	-	-	-	-	-	5곳 미만
전남	2	-	-	-	-	-	-	5곳 미만
경북	5	108,464	7,724	223,721	49,649	19,551	1,290	5곳 산정
경남	6	93,640	19,146	180,991	30,442	62,285	9,731	5곳 산정
제주	-	-	-	-	-	-	-	-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물품공급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8. [타코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타코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도	84	1206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타코비]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년도에 [타코비]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2024연중	-	-	-	-
광고	소계	2024연중	-	-	-	-
판촉	소계	2024연중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안양지점	지번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1049-4	031-387-032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타코비코리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타코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7,700 ]	-	-	-	-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2,200	계약 체결 시	교육 개시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 1,000 ]	-	-	-
(현금)보증금	1,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종료 1개월뒤 상계후 반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8,700
가맹비	5,500
개원전 교육비	2,200
(현금)보증금	1,000(부가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가맹본부	일반형 8평(26.4㎡)	27,400	3,425			
		일반형 12평(39.6㎡)	31,500	2,625			
		프리미엄형 15평(49.5㎡)	36,700	2,447			
● 참고 실내 : 목공+전기+설비+도장+타일+철거 등 // 실외 : 외부 금속공사							
일반형 8평(26.4㎡)	실외인테리어	가맹본부	4,500		계약체결일	공사 전 계약취소(그 간 소요비용 제외)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실내인테리어	가맹본부	13,000	1,625	"	"	"
	가구공사	가맹본부	1,200		"	"	"
	간판및실사디자인	가맹본부	4,500		"	"	"
	인테리어소품	가맹본부	1,000		"	상품 미공급시	
	조리도구및주방기구	가맹본부	3,200		"	"	업소용 4칸 냉장고 테이블냉장고 1200 포함
일반형 12평(39.6㎡)	실외인테리어	가맹본부	5,500		계약체결일	공사 전 계약취소(그 간 소요비용 제외)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실내인테리어	가맹본부	15,800	1,326	"	"	"
	가구공사	가맹본부	1,500		"	"	"
	간판및실사디자인	가맹본부	4,500		"	"	"
	인테리어소품	가맹본부	1,000		"	상품 미공급시	
	조리도구및주방기구	가맹본부	3,200		"	"	
프리미엄형 15평(49.5㎡)	실외인테리어	가맹본부	7,000		계약체결일	공사 전 계약취소(그 간 소요비용 제외)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실내인테리어	가맹본부	18,000	1,200	"	"	-

가구공사	가맹본부	1,800			"	"	-
간판및실사디자인	가맹본부	5,500			"	"	-
인테리어소품	가맹본부	1,200			"	상품 미공급시	
조리도구및주방기구	가맹본부	3,200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권 및 입지형성에 따라 금액이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철거, 닥터, 어닝, 도시가스, 에어컨 및 에어컨설비, 화장실 별도입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입지선정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십시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교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행위무능력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당사와 운영마인드 부합 시
종업업	만18세 이상일 것	행위무능력자가 아닐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타코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분할납부 절차가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 33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상표사용료 (정기지급금)	(주)타코비코리아	월납	220	개원시점부터 자동이체 한다.	영업표지의 사용대가로 반환되지 않음
POS	<b>협력업체</b>	월납	44	별도계약	-
광고 분담금 / 판촉 분담금	(주)타코비코리아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판촉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보수교육 훈련비	(주)타코비코리아	가맹비 포함 내역		교육 실시 10일 이전	보수교육이 실시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 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 또는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지연이자	(주)타코비코리아	연20%		귀하는 금전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급 기일의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년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서비스 상태관리	고객서비스 상태 점검	1년 1회	문의: 가맹사업팀 (1544-5280)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교육비로 일금일백만 원정(부가세별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	-	-	-	-
교육비	1,100	계약연장(갱신) 전 1개월 이내	갱신일전 계약 해지시	갱신일 경과 후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타코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타코비코리아]에 지

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교육비 2,200천원(부가세포함)와 계약보증금 1,000천원(부가세없음)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타코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별첨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타코비]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없음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타코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타코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없음	-	-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타코야끼 오리지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문의: 가맹사업운영팀 1544-5280
타코야끼 매운맛			
타코야끼 완전매운맛			
타코야끼 와사비맛			
타코야끼 불닭마요			
타코야끼 치즈맛			
타코야끼 갈릭치즈			
타코야끼 파타코			
타코야끼 눈꽃치즈			
외 10여종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타코야끼 오리지날	4,500	사전 통지	2023. 11월 기준(8알)
타코야끼 매운맛	"	"	"
타코야끼 완전매운맛	"	"	"
타코야끼 와사비맛	5,000	"	2023. 11월 기준(8알)
타코야끼 불닭마요	"	"	"
타코야끼 치즈맛	"	"	"
타코야끼 갈릭치즈	"	"	"
타코야끼 파타코	"	"	"
타코야끼 눈꽃치즈	5,500	"	2023. 11월 기준(8알)
외 10여종	-	-	-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타코비를 영업표지로 하는 가맹사업 (타코야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타코비, 타코비치즈볼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첨부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얻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학부모)에게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학부모)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타코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없음	-	-
대리점	-	-	-
일반소매점	-	-	-
기타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없음	-	-	
홈쇼핑	-	-	-	
전화권유판매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3	7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타코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 3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2 ]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5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5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2항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5조 2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5조[계약기간]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 1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8조[가맹비 및 로열티]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 1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0조[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1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2조[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시정요구권] 각 항을 위반하거나 당사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제6조 1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7조[乙의 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1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0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1항
귀하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구입강제품목을 지정된 사업자로 구입하지 않은 경우	제6조 1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1조[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1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3조[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1항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8조[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1항
기타 가맹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6조 2항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6조 2항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 2항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6조 2항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2항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 2항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6조 2항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6조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6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이 계약의 내용은 甲, 乙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34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이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1544-528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V-6-1의 표에 기재된 절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타코비]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타코야끼와맥주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운영팀 1544-5280

### 2) 개점시간 및 개점일수 제한

당사는 [타코비]의 개점시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나, 개점일수는 매월26일(2월은 24일)을 개장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개원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교사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교사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	해당사항 없음	행위무능력자 외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청결(4항목)	담당자 가맹점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부정기적	가맹사업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가맹점 방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부정기적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타코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및 판촉 행사	상품광고	총 비용의 50 %	광고비 총액의 50%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총수에 대비하여 부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
	홍보·판촉행사	-	가맹본부의 지원 외 전액부담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방법·시기·횟수 등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없이 상호, 로고, 디자인, 간판 등 온라인, 오프라인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1일당 금 이십만원(₩ 200,000원)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영업비밀 및 동종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甲에게 금 삼천만원(₩ 30,000,000원)을 지급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4항 및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자점매입한 금액 x3 의 금액 또는 금 일천만 원(₩ 10,000,000원) 중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자점매입 금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금 일천만 원(₩ 1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임의로 또는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남은 잔여 계약 개월수 X 100만원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7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5일)	-
사전점검		D-5~3中(1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환경개선(원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환경개선(원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가맹점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가맹점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점포) 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가맹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점(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가맹점(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가맹점(점포) 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점(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고객관리 및 신메뉴, 서비스교육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 7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1544-528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고객관리 및 신메뉴, 서비스교육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 7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팀 (1544-5280)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타코비]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타코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마인드 레서피 습득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운영 교육	가맹본부 영업방침 따른 소집교육, 서비스 제고, 신메뉴 습득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1개월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요청시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
재교육	가맹점 운영 미흡시 가맹본부 판단에 따른 재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타코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개업 교육	5일(2인 기준)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운영 교육	1일(1인 기준)	110	추정금액
특별 교육	1일(1인 기준)	220	추정금액
재교육	1일(1인 기준)	165	추정금액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가맹점 관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 및 가맹점 관리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 시 당사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한국외대점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8(이문동)
2	경기	분당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12, 1층 110호
3	경기	미금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1층 근108호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2년 6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02,524	직전 사업연도의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하였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1544-528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 1 0 )**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1. 『타코비』 개원 예정지 주변의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본부 (주)타코비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_\_\_\_\_ 지역

NO.	상호	소재지	가맹계약체결 일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 별지 3. (주)타코비코리아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지 4.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별지 5.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